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장애주류화: 국제동향 및 한국의 혁신 방향

황 주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 은 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장애포괄적개발, 장애와 개발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 연구』의 일부를 발췌·보완한 것임을 밝히는 바임

*교신저자: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hwangju@kihasa.re.kr)

■ 투고일: 2013.4.24 ■ 수정일: 2013.6.7 ■ 게재확정일: 2013.6.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세계인구 중 11억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여전히 빈곤퇴치이다(권을 외, 2006).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UN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한 본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를 위한 개선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는 데에 합의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즉, 선진공여국들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김정현, 2008), 공적개발원조의 원조성과를 제고하는 방향(개발협력의 효과성, 책임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으로 원조체제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여국의 선진화된 개발 원조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원조를 수행하여야 해당 국가의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전략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인 집단을 포괄(inclusion)하고,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Mainstreaming Disability)이며,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란 장애포괄적개발(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¹⁾. 포괄(inclusion)이란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주류범위 안에 포함하는 것을 뜻하며, 장애포괄적개발(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이 뜻하는 포괄은 공적원조의 대상으로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프로그램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 시켜(WHO, 2011에서 재인용)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1) 본 연구에서도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와 '장애 포괄적 개발'은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전략 및 방향성을 이해하고 원조효과성 및 원조의 질을 제고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움직여야 한다. 2009년 11월 한국은 마침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써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하였다. 다시 말해 대외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의 위치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위치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고, 한국의 개발원조에서도 그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곽숙희 외, 2007). 한국정부는 이미 이 같은 국제적 기대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²⁾(곽숙희 외, 2007; 허라금 외, 2010; 박수경·이주영, 2011). 특히나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회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의 유치와 본 회의 안건으로 ‘장애포괄적개발’관련 논의들을 포함한 것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한국의 세계빈곤 퇴치에 대한 관심과 선진화를 시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세계원조총회에서 제시된 장애포괄적개발관련 의제는 전체 주제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한 주제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1) 한국사회 내에서 장애포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미비하고 (2) 국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국제협력에서 ‘장애’의 이슈처럼 개발의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범분야 이슈’로는 ‘환경’과 ‘성(gender)’이 있다. 이들 주제들이 199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것(박명지, 2009; 임소영, 2012)과 달리 장애의 이슈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특히나 성주류화 논의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부터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성주류화관련 연구 및 논의들을 전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 바 있다(김양희 외, 2001; 김경희, 2005; 허라금, 2005; 허라금 외, 2010).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2008년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2011년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사업에서 이들 이슈들을 범분야 이슈로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전략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주류화’ 논의는 장애계에서조차 매우 제한적으로만 논의되어 왔으며(김형식, 2010; 김형식, 2012), 때문에 장애주류화와 관

²⁾ 한국정부는 (1) 공적개발원조 기금을 2012년 1조 9천억 원 수준에서 2015년까지 약 3조 6천억 원 (GNI 0.25% 수준)으로 확대할 것과 (2) 원조효과성의 증대를 위해서 개발에 대한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음.

련된 국제적 흐름에 대한 학계에서의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장애주류화를 논의하고 이들 개념들을 소개하며, 장애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수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알아보며, 주요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현황에 기초한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장애계의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의 이해의 폭을 넓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의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켜 한국의 국제협력에 장애주류화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 및 자료 분석 방법이 진행하였으며,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장애포괄적개발 논의와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조사, 분석, 정리하였다. 특히나 장애포괄적개발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호주원조기관(AusAID)의 이행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한국의 현 상황 분석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최근 수행한 장애관련 사업내용 및 예산 분석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주요 개념들은 무엇인가?

둘째,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장애포괄적개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셋째,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호주의 장애주류화 배경, 접근 방식 그리고 이행전략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 ODA 이행에 있어 장애주류화 수준은 어떠하며,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II. 장애주류화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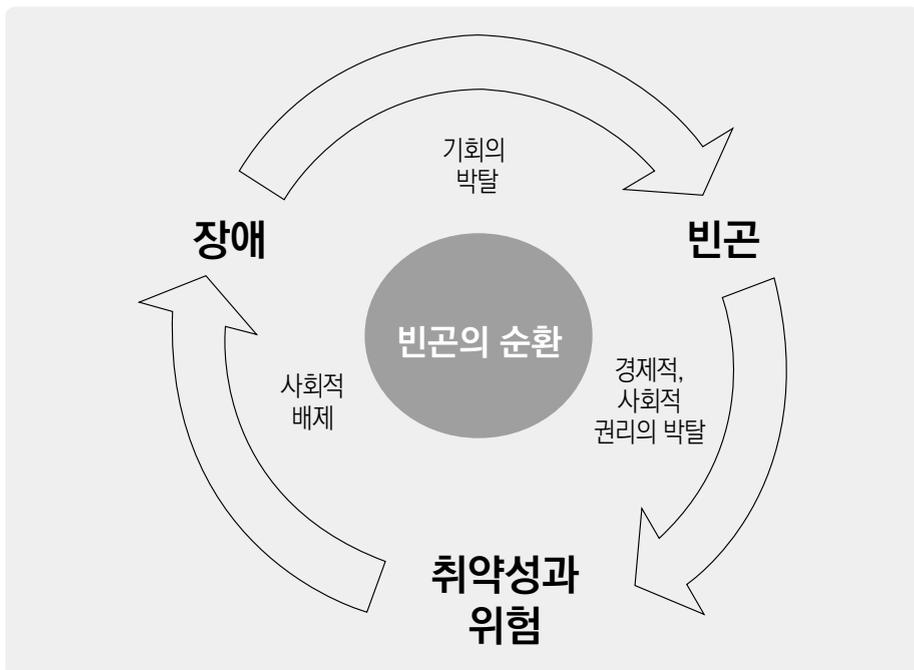
1. 장애와 빈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개발도상국가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와 빈곤은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Tanya & Amerena, 2006; Coleridge, et al., 2009). 즉, 빈곤은 장애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로 작용한다.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열악한 의료 케어, 그리고 위험한 생활환경 등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노동시장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빈곤탈출이 어려워져 사회적 기능이 제약되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특성을 나타낸다(이하나·박단비, 2012; WHO, 2011). 이처럼 장애와 빈곤은 서로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그림 1), 그 이행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빈곤의 특성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확장되며,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주류화 된 영역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이하나·박단비, 2012). 즉, 물질적 결핍이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탈주류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이하나·박단비, 2012). 따라서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맥락과 환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순한 물질적 결핍을 넘어 ‘장애화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까지로 확장되어 이해되어야 한다(이하나·박단비, 201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 15%(약10억)의 인구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장애인은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소수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WHO, 2011). 때문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국제 개발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세계 빈곤 퇴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든 개발 활동에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균등한 원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UN, 2010).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와 이들의 빈곤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인의 빈곤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다면 국제사회의 목표인 MDGs(세계빈곤퇴치)의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

로 간주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 주류화를 이행할 수 있는 전략들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UN, 2010; UN, 2011; UN, 2012).

그림 1. 빈곤의 순환



자료: Coleridge et al.(2009).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가 설정되었을 당시에는 그 개입목표 분야로서 장애인의 빈곤 이슈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다(김형식, 2010). 그러나 이후 빈곤과 장애 이슈를 포함시키기 위한 장애계와 학자들의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0년 9월 UN 총회에서는 모든 개발의 측면에서 장애주류화를 권고하는 “2015년 이후의 장애이슈와 새천년개발목표의 실천”에 대한 결의안이 총회에 제출되었다(김형식, 2010). 이 결의안에서는 MDGs의 이행을 위해 장애주류화를 도모하고, 더 큰 장애 포괄적 국제협력을 장려하며, 장애인을 개발과정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제적 기준

국제적 기준이라 함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경제사회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 및 ‘장애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UN, 2012). 즉,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장애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애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장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1) 198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시작으로 (2)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WD, 1994)으로 발전하였으며, (3) 최근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06)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 프로그램’은 UN 총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와 평등(Equality)’을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정부와 사회의 자원할당, 선진국의 자원 및 기술 이전, 장애예방 및 재활, 장애인에 대한 기회의 평등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대한 표준규칙’은 사회적 모델에 기반을 둔 국제적 규범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증진, 의료 지원, 재활지원서비스와 같은 전제조건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규범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확대, 교육, 고용, 수입과 사회보장, 가족생활과 인격유지,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종교를 타겟 영역으로 잡고 정보와 연구, 정책개발과 기획, 입법, 경제 정책, 업무의 국제적 협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조직 및 점검과 평가,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 간 기술 및 경제협력, 적극적인 국제 활동 등을 실행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12년 7월 현재 153개 국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상태이다. 특히 본 협약의 제32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증진, 보호,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양방향(bilateral)³⁾ 혹은 다자간(multilateral)⁴⁾ 협력 뿐 아니라 당사국을

3) 국가 대 국가로 공여되는 개발원조를 말하며 양자간 협력은 상환의무여부에 따라 무상협력(grants)과 유상협력(concessional loans or soft loans)으로 구분됨.

위한 장애포괄적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형식, 2010). 현재 국제협력에서의 장애이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협약은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모델보다 진보한 '인권'에 기반 한 접근으로 보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배제를 막고,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김형식, 2012). 즉, 장애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등한 참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동등한 자격과 기준을 모든 생활영역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권리 협약'의 제 32조에 따르면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장애인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김형식, 2012).

3. 장애포괄의 개념 및 장애포괄적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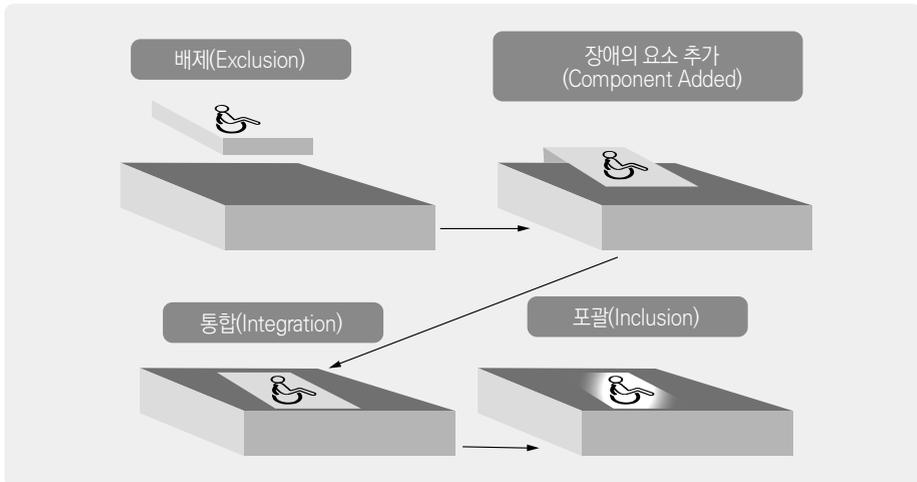
2012년 UN총회('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주류화')에서는 개발에 있어서의 장애이슈를 환경과 성(gender) 같은 범분야(cross-cutting)성격의 이슈로 정의하였다.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란,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2005년 UN '개발을 위한 유럽 컨센서스'에서는 인권, 성, 굿거버넌스, 아동의 권리와 선주민(good citizen), 분쟁예방, 환경, HIV/AIDS를 범분야 이슈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범분야 이슈는 정부 간 협의 및 국가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예산지원계획 등의 프로그램 준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분야'와 개념적 차이가 있다. '분야'는 프로젝트의 활동 및 결과와 관련이 있는 반면, '범분야'는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자체는 교육 분야에 해당되지만, 여학생의 교육에 대한 기회의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여성장애 학생을 포함한다면, 이는 범분야 이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분야 이슈로서 장애포괄적개발이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

4) 공여국이 개도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기 않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적인 대부기관에의 출자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포괄적개발을 이해하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개발에 있어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슈이다. 즉, 개발정책에 장애의 이슈를 어떻게 범분야 이슈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장애에 대한 관점’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핀란드 Wiman(2003)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장애에 대한 관점’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그림 2). Wiman(2003)에 의하면 장애관점의 가장 보편적인 관점은 ‘장애 - 한정적 접근(disability-specific approach)’방식이라 하였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 및 이들의 요구만을 고려한 접근을 뜻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장애인은 일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일반인으로부터 배제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분리되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된 의학적 혹은 신체적 재활 프로젝트만을 제공받게 된다.

그림 2. 배제로부터 통합까지



자료: Wiman(2003).

두 번째 장애관점은 ‘구성요소접근(Component approach)’방식으로 이는 ‘장애중심적 접근’방식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장애인이 일반 주류사회 속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된 서비스 혹은 프로젝트를 제공받는 상태를 뜻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주류사회 속에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장애인의 지역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분리가 존재하는 상태를 뜻한다. 두 번째 장애인관점보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장애인관점은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방식인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장애인이 일반 주류사회 내에 있고,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대응하는 기관 혹은 서비스가 주류사회의 계획 및 예산 내에서 진행되어 보다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일반학교 안의 특수학급이 통합적 접근에 해당된다. 즉, 일반학교 학생들과 장애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동등한 수업을 제공받게 되는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여전히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접근(inclusive approach)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인권기반 모델에 기인한 접근으로, 장애인이 일반 주류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과정과 계획에서 최대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이루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을 뜻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에 있어 포괄적 접근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구분된 특수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일반학교내의 일반학급에서 청각장애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개별요구에 따라 수화통역사나 적절한 보조기기의 사용을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게 될 때 이를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개발에 있어서 ‘장애의 이슈를 어떻게 접근하는가?’하는 관점의 변화는 위에서 살펴본 장애의 국제적 규범적 접근과 일맥상통한다(김형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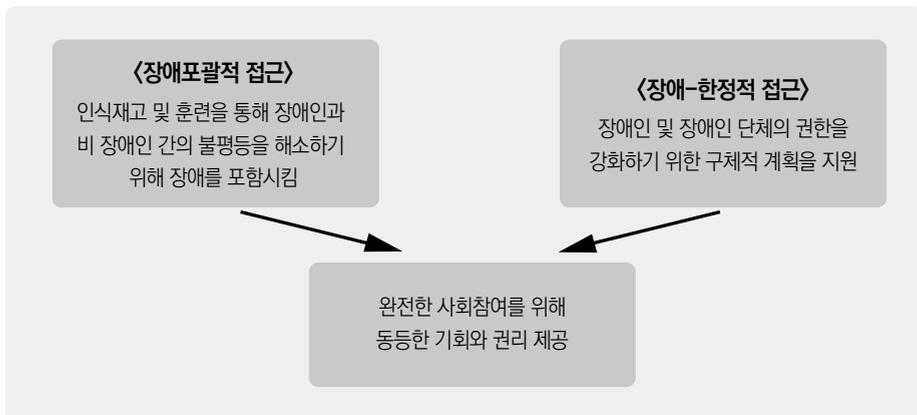
따라서 ‘장애포괄적개발(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이란 개발에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하기 위한 전략을 뜻하며,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 시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포괄적개발은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뿐 아니라 그들 가족의 복지 향상과 관련이 있고, 이는 MDGs의 국제적 개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슈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장애포괄적개발 전략: 이중 - 트랙 접근

이중-트랙 접근(Twin-Track approach)은 ‘장애의 문제는 범분야(cross-cutting)의 특징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접근은 OECD/DAC, UN 등의 다자기관과 주요 양자기관 등의 국제사회가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전략으로,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장벽의 제거를 위해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와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법을 뜻한다.

이러한 이중-트랙 접근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중-트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든 보편적 개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개발 활동에 장애 이슈를 포함시키는 포괄적(inclusive) 접근 방법과 둘째, 장애인의 특정 요구 및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지원과 같은 장애-한정적(disability-specific) 접근 방법으로 구성되고 있다(그림 3).

그림 3. 이중 - 트랙 접근



자료: Coleridge et al.(2009).

이러한 이중-트랙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공평한 기회의 제공과 같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또한 보편적 개발의 과정에서 장애의 이슈

를 고려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화된 개발사업(장애-한정적 접근)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이다. 대부분의 공여기관들은 장애를 위한 목표 이행 과정에서 “이중-트랙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나, 이 접근법에서는 장애-한정적 개입과 장애 포괄적 개입이 동등하게 수용되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강조되지 않는다.

장애-한정적 계획이나 사업은 장애를 국가적 접근이나 원조 프로그램 전반에 포괄하거나 주류화(mainstreaming)하려는 시도에 비해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장애-한정적 계획이나 사업이 포괄적 사업전략에 통합되거나 주류화 목표(mainstreaming goals)와 연계되거나, 보다 광의적인 사회 이슈로 다루어진다면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Coleridge et al., 2009).

Ⅲ.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장애포괄적개발

1. UN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장애이슈

2012년 UN총회는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주류화’라는 제목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주류화 이행 현황 및 이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UN, 2012). 본 회의에서는 크게 4가지 지침을 제공하였는데 첫째, 개발에서의 장애의 이슈는 범분야(cross-cutting)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둘째, 개발에 있어서의 장애주류화는 2015년을 넘어 해외 국제개발협력발전의제에서 UN 시스템의 역할 확대를 통해 보다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본 총회에서는 장애의 이슈를 주류에 편입시킬 최선의 방법으로 (1) ‘장애’ 및 ‘장애와 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 및 데이터의 확보, (2)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그리고 (3) 접근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a)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장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과 (b)장애의 이슈에 있어 개발커뮤니티(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DPOs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s)의 능력을 강화할 것, 그리고 (c)장애인과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기구)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⁵⁾을 위한 회의(Rio +20)'가 브라질의 리오테 자르에서 개최되었는데, 본 회의 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Rio+20 결과물)을 위해 다섯 개의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의 이슈'는 이 다섯 개 영역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UN Enable, 2012). UN Enable(2012)에 따르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과 보호(9단락),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법·행정적 절차 및 정보 접근과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었다(43단락). 다시 말하면, 본 회의의 성과에 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맥에서 녹색경제정책과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58(K)단락),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계획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135단락).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와 사회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도시와 시골지역의 도시화건설 계획의 통합적인 접근의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35단락). 나아가 본 회의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할 것과, 보편적인 접근(Universal access)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강조하였다(229단락). 이러한 결과는 장애포괄적 발전을 위한 권익옹호자와 협력자 그리고 UN 및 관련 기관들의 노력으로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선진 공여국의 장애포괄적개발

이렇듯 빈곤 퇴치 전략 구상에서 사회포괄적관점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을 개발 노력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기구들(international agencies)은 일반적인 사회 통합(integration)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소수단체, 특히 장애인을 국제 개발 노력에 포괄(inclusion)시키기 위한 연구 및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주국제개발청(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노르웨이개발협력기구(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DA),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5) '어떻게 하면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및 환경보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미래 지향적 발전을 의미한다.

Agency: SIDA),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미국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 많은 주요 공여주체들은 이미 장애포괄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청(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뉴질랜드 국제원조개발청(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NZAI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개발 또는 부문별 정책에서 장애 부문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력기관들은 장애의 이슈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음에 동의하고, 장애인을 위한 '권리기반의 틀'이 필요함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공여기관은 개발의제 전반에 장애를 포괄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프로그램 및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제기구별 주요 내용

<p>호주국제개발청(AsuAI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고 MDGs 달성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의 당위성을 인식 - 호주 정부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5가지 전략목표 중 세부 목표인 '모두를 위한 기회증진' 내용 안에 아동 및 여성의 이슈와 함께 장애 이슈를 포함
<p>캐나다국제개발기구(CI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아동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 중에서 4가지 개발목표 (a)건강과 영양, (b)기본교육, (c)에이즈(HIV/AIDS)퇴치, (d)아동보호를 강조 - 개발목표의 세부내용에 있어 특히 장애아동의 취약성을 인식하여 이들의 보건으로 혜택으로부터의 배제와 기초교육 및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 서비스 제공기관에의 접근의 어려움 등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p>노르웨이개발협력기구(NOR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을 위한 행동계획'을 출간,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통합 전략'으로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이자 참여자로 이들의 대인관계와 이들이 사는 지역사회,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 - NORDA의 장애포괄적개발 노력은 종합적인 장애포괄접근법을 사용, 장애의 요소가 모든 개발 사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범분야 이슈임을 인식
<p>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와 '인권증진'이라는 주요 국제기제(장애인 10년에서 작성된 문헌인 '세계행동프로그램에 명시된 지침서'와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에 포함된 규칙')에서 기술된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2005년 장애아동과 성인장애인을 위한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8가지 영역으로 (a)빈곤퇴치 전략보고서, (b)학교, 교육 및 연구, (c)건강과 재활, (d)에이즈(HIV/AIDS), (e)무장충돌과 인도주의, (f)제한 시설(infrastructure), (g)정보 및 선택권 형성(information and shaping option) (h)시민사회 및 다른 네트워크 지원을 제시

미국국제개발청(USAID)

- 장애정책보고서(Disability Policy Paper)에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파악,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제를 포괄적으로 기술
- USAID는 장애인 옹호 및 이들을 위한 원조 뿐 아니라 사업의 개발과 계획, 이행에 있어 ‘장애’를 포함시키는 정책을 시행
- ‘포괄’이라는 기조아래 ‘장애인 및 이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

일본국제협력청(JICA)

- 글로벌 이슈 지표에 장애를 분명하게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계획을 추구
-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행 및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제 협력의 노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주목
- 나아가 다른 분야, 심지어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

자료: Inclusion International(2006) 재구성.

IV.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의 장애포괄적개발 노력⁶⁾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은 다른 선진공여국의 원조프로그램에 비해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체계를 갖추어 놓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 중 하나이다. 또한 호주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별 프레임워크에 속해있는 나라로 호주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향후 한국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추진배경

2008년 7, 8월에 호주와 협력하는 다수의 개발도상국가 및 호주 내 장애개발 관련 핵심 이해당사자와 함께 호주 원조프로그램의 장애통합 전략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해당사자로는 장애인과 이들 가족, 개호인(carers), 정부대표, 민간단체, 서비스제공기관 및 기타 공여자들이 포함되었다. AusAID(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협의의 진행에 앞서 장애전략협의보고서(Disability Strategy Consultation

⁶⁾ AusAID 홈페이지 “Development for all” 참조

Paper)를 AusAID 홈페이지에 큰 활자체, 음성, 점자 등의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널리 배포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 TF팀을 구성하여 14개국에서 협의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공청회, 소규모 포커스 이벤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장애포괄적개발 전략을 완성하였다.

2. 호주의 국제원조를 위한 목표

2010년 후반 호주 정부는 15년 만에 최초로 (1) 현재 진행되는 개발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2) 향후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 원조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호주 원조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다. MDGs 개발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최근 호주 정부의 새로운 국제 개발협력의 주요 5가지 전략목표는 ① 생명 구조, ②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③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④ 효과적 거버넌스, ⑤ 인도주의적 재난 대응으로 이러한 5가지 전략목표는 다시 10가지 세부 목표로 구성되는데, 2011년 7월 '장애인의 삶 개선'은 5가지 전략목표 중 하나인 ②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의 일부로 아동 및 여성의 이슈와 함께 장애의 이슈가 포함되어 세부 목표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호주 국제개발협력의 5가지 핵심전략목표와 10가지 세부 목표

(1) 생명 구조
1-1 공중보건문제 개선 :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을 확대
1-2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여성과 아동의 삶을 개선 : 개선된 모자보건서비스의 접근을 확대하여(훈련된 출산도우미와 산파 등 지원) 빈곤 여성 및 아동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예방 및 예방접종, 치료 지원 실시
(2)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2-1 아동, 특히 여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함 : 아이들 특히 여아들이 장기적으로 보다 개선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때가 되었을 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2-2 여성들의 역량강화 : 개발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중대한 역할이 개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 지도자 역할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
2-3 장애인의 삶 개선 : 모두를 위한 개발(Development for All)

(3)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3-1 식량안보를 증진

: 농업 생산, 제반 시설, 사회적 보호, 시장 형성 등에 대한 투자

3-2 빈곤자들을 위한 소득, 고용, 창업 기회의 향상

: 전반적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가령 지속가능한 광업 개발 등

3-3 기후변화 및 환경적 요인이 빈곤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

(4) 효과적인 거버넌스

4-1 빈곤자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 사회보장 및 정의와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5) 인도주의적 재난대응

5-1 재난대비 강화 및 인도주의적 위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3. 장애인의 삶 개선

‘장애인의 삶 개선’이라는 세부목표는 호주원조 전략목표 5개 중 두 번째 목표인 ‘모두를 위한 기회증진’에 포함된 세부목표로 전체 10개의 세부목표 중 하나로 장애인의 이슈를 포함하였다. 즉, 호주는 장애인을 개발 원조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호주 원조프로그램의 우선사항 중 하나로 포함하였으며, 본 전략은 장애인과 이들 가족 및 개호인(carers), 정부 대표, 민간단체,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 20개 개도국으로부터 자문을 실시(DRG: 명예 자문단)하여 약 500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이 같은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모두를 위한 개발’ 전략은 원조 프로그램 전달 방식을 통한 점차적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의 모든 측면에 내재된 장애 이슈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전략은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 노력을 위한 의제 개발의 일환으로 모두를 위한 개발의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 AusAID의 5가지 기대성과와 전략

AusAID에서는 ‘장애인의 삶 개선’이라는 세부 목표 설정에 따른 기대성과 및 이를 위한 전략들도 마련해 놓았는데, AusAID가 장애포괄적개발전략에서 기대하는 첫 번째 성과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 마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1) 포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2) 모든 국가 프로그램에 걸친 통합

교육 및 접근 가능한 제반 시설 부분에 투자와 노력 그리고 발전 강화 (3) 장애인이 겪는 환경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한정적 계획, (4) 호주원조프로그램을 통한 유연한 지원기제 개발이 그것이다. 또한 AusAID가 장애포괄적개발을 이행하는데 있어 두 번째 기대성으로 꼽고 있는 것은 ‘예방 가능한 장애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인도주의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건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결국에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저소득층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모자보건과 영양,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예방접종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장애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정부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및 당뇨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 퇴치를 위한 노력(예. 실명예방계획: Avoidable Blindness Initiative: ABI)을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관련 활동을 강화해나감으로써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기대성으로서는 장애와 개발 부분에서의 효과적 리더십 구축이다. 호주는 아·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조개발 전략에 있어 장애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여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호주는 국제사회의 행동(action)과 자원동원을 위한 전략적 기회도모를 위해 ‘호주지도자상(Australian Leadership Award Fellowship)’ 수여, 장애포괄적 모범사례 제시, 다자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단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장애와 개발 부문에서의 리더십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네 번째 기대성과는 장애포괄적개발에서의 전문성과 효과성으로 이를 위한 호주 AusAID의 궁극적인 전략은 국제개발에서의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 장애이슈를 명확히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포괄하는 것이며 이러한 포괄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기대성과는 장애와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 장애와 개발에 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지역 상황과 문화에 민감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AusAID의 지침원칙에 따라 장애 여성과 이들 가족,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간호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정보와 조사 그리고 자료의 분석, 정보의 배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 과정의 참여자로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V.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주류화 현황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

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됨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대외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의 위치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위치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으며 OECD/DAC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원조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 원조 규범에 적극 부응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곽숙희 외, 2007).

한국 ODA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KOICA는 1991년 제정된 ‘KOICA법’에 의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1987년 제정된 ‘EDCF법’에 의해 EDCF를 사용하여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KOICA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무상원조를 뜻하는 것으로 2010년 KOICA를 통해 제공한 무상원조의 총액은 약 4억5천4백만 달러로 이는 한국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0.05 수준⁷⁾이며 무상원조의 54.5%인 약 2억4천7백 달러가 아시아 지역의 원조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14.9%, 중남미 10.6% 순으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KOICA의 분야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분야 중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원조규모가 전체의 29.9%, 약 1억2천6백 달러로 가장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분야 17.1%, 교육 분야 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업유형별 원조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분야가 63.6%인 약 2억8천9백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봉사단 파견이 12.0%, 연수생 초청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자 간 원조비율이 95.9%로 거의 모든 원조가 양자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0).

⁷⁾ UN에서는 ODA의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0.7%를 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8년 이 기준을 달성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만이 본 목표를 달성하였다(권율, 정지선, 2008).

2. 한국 국제개발에서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전략 및 추진방향에서 장애의 이슈와 같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한국의 OECD/DAC의 가입이후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2008년 한국의 OECD/DAC 가입을 위한 특별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에서는 DAC측에 의해 ‘범분야 이슈의 점진적 확대’와 ‘주류화’가 권고된 바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원조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범분야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한국정부는 2010년 7월 「국제협력기본법」을 발효하였으며,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⁸⁾에서는 「국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의결되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통합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현미주, 2011).

특히 「국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정신 및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더불어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한 범분야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2011)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제4회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의 유치와, 본 회의의 안건 중 하나로 제시된 장애포괄적개발 관련 논의들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발전 및 선진화를 시사하며, 향후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 긍정적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총회에서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기금을 2012년 1조 9천억 원 수준에서 2015년까지 약 3조 6천억 원(GNI⁹⁾ 0.25%수준)으로 확대할 것과 원조효과성의 증대를 위해 개발에 대한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박수경, 이주영 2011). 이렇듯, 우리나라

8)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고, 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편되었다.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1)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 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3)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이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역임하며, 위원회는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국무총리실: <http://www.odakorea.go.kr/oz/policy/OdaObjtRolejsp>).

9)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지표이다.

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32조 그리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의 ‘국제협력’ 부분의 목표와 동일하게 장애포괄적관점의 반영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국제협력부분에서의 장애포괄적관점의 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은 이미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세계원조총회에서 제시된 장애포괄적개발관련 의제는 전체 주제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장애포괄적개발과 관련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하고, 범분야 이슈로서 장애포괄적개발의 이슈를 바라보지 못했던 한계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현재 KOICA에서는 범분야 이슈로 ‘환경과 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장애’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와 관심의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2008년 KOICA에서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며, 2011년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환경 및 여성 이슈를 전담하는 조직들을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현미주, 2011). 즉, 범분야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에 있으나 KOICA 전 사업에 대한 적용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현미주, 2011). 이제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도 ‘환경’과 ‘성’과 마찬가지로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하며, KOICA에서는 장애포괄적개발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세계 빈곤의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장애주류화전략에 관심과 노력을 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과 여성 그리고 장애와 같은 범분야 이슈가 실제 원조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KOICA 사업의 ‘계획’ 및 ‘시행단계’에서부터 추가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장애주류화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KOICA내부에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주 낮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정여서 범분야 이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업의 시행 및 이행단계에서 범분야 이슈들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함께 개발 할 필요가 있다.

3. KOICA: 범분야 이슈 적용 현황

범분야 이슈로서의 장애이슈가 한국의 원조사업에 실제적으로 포괄되기 위해서는 장애주류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KOICA 사업 및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분야 이슈 자체를 사업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원조사업의 모든 시행단계에서 범분야 이슈들을 ‘고려’하는 부차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현미주, 2011). 즉, 범분야 이슈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범분야에 대한 고려는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과정 없이는 사업의 시행 및 이행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원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원조목표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ICA에서 1991년 설립 후 2012년 현재까지 시행한 다양한 사업 중,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장애’ 및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과 이의 사업액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장애’ 및 ‘장애인’ 포함 사업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계획과 시행단계 그리고 이행단계에서 이중-트릭접근 방식으로 (1) 장애-한정적 접근법이나 (2) 장애 이슈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 및 ‘장애인’을 사업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른 임의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KOICA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분류에 있어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KOICA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분류를 따라 작성되었다

표 3. KOICA 장애 관련 프로그램

구분	내용	기간(년도)	사업액(\$)
프로젝트	-불가리아 장애인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	1997-1998	52만
	-한·콜롬비아 우호 재활센터 건립사업	2009-2012	1,150만
	-엘살바도르 특수교육학교 건축 및 복구 지원 사업	2010-2012	230만
물자지원	-예멘 장애인용 휠체어 지원	2000	21만
	-레바논 장애인 재활센터 IT 기자재 지원	2006	37만
	-무력충돌 희생자 및 취약계층 식량지원	2008	47만
	-중국 쓰촨성 재활센터 기자재 지원	2009	12만

민간협력 사업	-아프가니스탄 전쟁피해자 의수족 장착사업	1996-1998	9만
	-중국 연길 도시지역 보건사업: 의료, 복지, 상담사업 등 과 더불어 장애인 가정왕진 및 가정간호(약500회) 및 장애인 재활치료(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실시	2007	33만
	-베트남 빈곤층 장애인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	2009-2012	20만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및 바우카우 지역 개발 사업: 카텔 로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2009	41만
	-캄보디아 권리와 자립에 기반 한 지체장애우 역량강화 (Empowerment) 프로그램	2010-2011	25만
	-말리 방카스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식수위생사업	2011	13만
	-케냐 보건예방교육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장애발생 감소 및 소외계층 치료교육을 통한 역량강화(Empowerment) 강화사업	2011	10만
	-필리핀 까인따 도시빈민 의료지원 및 청소년기 여성교육 지원 사업	2011	5만5천
	-방글라데시 모성 보건을 위한 신뢰성 있는 지역사회 형성	2011	5만
봉사단 현장사업	-파라과이 루이스 브라일레 시각장애학교 건축사업	2008	5만
	-기타 현장 봉사	-	-
연수생 초청	-이라크 KRG 인권 및 장애인 정책 개발 과정	-	9만 1천
	-캄보디아 통합 수자원관리('11-'13)	2011-2013	13만 2천
	-방글라데시 의과대학 교수 및 특수교사 초청 '자폐아 진단 및 치유과정' 연수사업	2013	7만 5천

자료: 문상원(2011) 및 2012년 KOICA 내부자료 재구성

위의 표를 살펴보면, KOICA의 장애관련 사업들은 주로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 재활센터, 특수학교 등의 설립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국한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자재 지원과 의수족 장착사업 등 장애-한정적인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량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장애인의 통합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이중-트랙 접근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포괄적 사업들로 볼 수 있는 것은 식수위생사업과 같은 수자원관리와 모자보건사업,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해 일부 장애인을 고려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고려의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모자보건, 직업훈련, 인적 역량강화

사업 등의 수행 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직·간접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의 참여 및 접근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문상원, 2011).

VI.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

한국은 2009년 OECD/DAC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되었고, 2012년 제 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이끌어갈 ‘인천전략’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태장애인 10년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함께 맡게 되었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내에 당면한 다양한 장애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이슈에 대한 동향을 이해하고,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아보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장애주류화(장애포괄적개발)의 개념을 이해하며,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장애포괄적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원조개발에서 개발과 장애의 관련성을 명확히 이해하여 장애포괄적개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 및 장애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주류화 이슈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 장애포괄적개발 및 장애포괄적정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 정신 및 목표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등 실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장애·평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의 이슈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장애의 이슈를 범분야 이슈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평가부분에 범분야 이슈의 반영정도(장애포괄정도)를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의 경우에서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 하에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top-down방식의 접근이 효율적일 것이다. 즉, 초기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의지를 통해 KOICA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이슈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포괄적접근이 이행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범분야 이슈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여성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제개발 협력에 성 주류화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에 비하면 장애포괄적개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주도적인 장애포괄적개발 전략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장애를 포함시키고, 원조프로그램의 원칙과 전략, 주요 요소 등에 장애주류화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이를 위한 행동계획, ‘장애주류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down-top 방식의 접근도 병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관련 단체에서는 국제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의 필요성과 장애포괄적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이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유도·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야 한다. 즉,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해 장애주류화 관련 인식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KOICA의 사업수행 방식은 원조효과 향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지원전략(CAS)이 수립되어 수원국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계획, 시행,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OICA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어떻게 ‘장애’이슈를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 이행 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장애인 관련 단체의 국제개발 및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넓히고, 개발도상국가의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장애관련 정보들을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들을 KOICA와 공유하여 개도국 장애인의 빈곤해결에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의 이슈를 어떻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협력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할 것이다. UN 빈곤감소전략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KOICA에서는 아직까지 범분야 이슈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고, 특히나 장애의 이슈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보다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장애를 세계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 주류화를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KOICA 사업에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안내지침이 필요하며, 장애 포괄적 사고와 실천을 이행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직원 훈련이 필수적이다. KOICA의 역할은 협력국가들이 장애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KOICA 직원들의 장애포괄적 개발에 대한 이해는 사업 프로그램 및 한국의 원조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주류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곧 세계빈곤을 감소의 결과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만일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단체들과 학계 그리고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원조 전략 및 이의 이행이 필요하다. 호주의 장애포괄적 개발 전략에서도 나타나듯이,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모든 KOICA 직원 및 NGO 그리고 장애관련 단체와 한국정부의 파트너십 없이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KOICA내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을 통해 장애개발가이드라인 및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권고와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관련 단체들과 학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호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보편적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의 예는 '모든 국가프로그램에 걸친 통합교육 및 제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음), 장애포괄적개발 사업은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고하기보다 몇 가지 사업에 주력하여 장애주류화를 시도하고 이의 성과를 평가하고 알리는 작업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행 가능한 장애포괄적 사업을 고민하고 이를 이중-트랙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계획하고 시행하며, 이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KOICA 사업 및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제반시설(예. 도로, 학교, 건물, 병원 등)의 건립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반시설을 건립한다면, 일반 사업에서 장애의 이슈를 포괄하는 좋은 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주의 장애-한정적 사업의 예로는 장애인단체들의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그리고 효과적 옹호를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계획’ 마련이 있는데, KOICA에서도 장애-한정적 사업의 하나로 ‘한국 장애인단체의 국제개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장애인단체들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역량개발에 힘쓰고 이들이 아태지역 수원국 장애인단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황주희는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재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 정책, 직업재활 등이다.
(E-mail: hwangju@kihasa.re.kr)

박은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여성, 장애와 빈곤 등이다.
(E-mail: dmsp19@hanmail.net)

참고문헌

- 곽숙희, 정혜선, 정미경(2007).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주류화 전략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율, 김한성, 박복영, 황주성, 홍수연(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정지선(2008).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 동향과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8(6), pp.1-14.
- 김경희(2005). 여성정책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pp.256-286.
- 김양희, 김홍숙, 이수연(2001). 21세기 성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현(2008).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월간 해양수산*, 288, pp.34-49.
- 김형식(2010).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 spurned dimens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연구*, 2(2), pp.65-93.
- 김형식(2012). 장애포괄개발: RI의 경쟁적 안건. *재활복지*, 16(4), pp.1-16.
- 문상원(2011). 2012 아태장애포럼(APDF)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기획 강좌 자료집.
- 박명지(2009). KOICA 사업의 녹색화 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경, 이주영(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논의와 성과. *지역경제포커스*, 11(48),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한나, 박단비(2012).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 박탈경험, 고립감 및 생활만족도 연구-서울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 *재활복지*, 16(1), pp.1-23.
- 임소영(2012). ODA 사업의 녹색화 현황 및 과제. *산업경제정보*, 545, pp.1-12.
- 한국국제협력단(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국제협력단(2010). 2010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집.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2011). 성주류화 가이드라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허라금(2005). 성주류화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21(1), pp.199-231.
- 허라금, 강선미, 정진주, 정미숙, 이은주(2010). KOICA사업의 성주류화 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현미주(2011). 국제개발협력 범분야 평가 추진정책 논의 동향. *국제개발협력*, 12(2), pp.187-199.
- AusAID (2010). *Development for All: Towards a disability-inclusive Australian aid program 2009-2014*. Canberra: AusAID.
- Coleridge, P., Simonnot, C., Steverlynck, D. (2009). *A society which is good for disabled people is a better society for all*. EC Development Cooperation.
- Inclusion International (2006). *Disability, Development and Inclus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Scan of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research at selected multilateral and bilateral institutions*. <http://www.handicap-international.fr/bibliographie-handicap/5CooperationInternationale/make-development-inclusive/docsen/inclusionIntern.pdf>에서 2012.6.26. 인출.
-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Inclusion of the disability dimension in Nordic development Co-operation* Copenhagen Conference.
- OECD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Paris: OECD DCD.
- Tanya, B., Amerena, P. (2006). *Disability and inclusive Development*. UK: Leonard Cheshire International.
- United Nations (2010). *Realiz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2015 and beyond*, A/RES/65/186.
- United Nations (2011). *Disability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view_of_disability_and_the_mdgs.pdf에서 2012.7.16. 인출.
- United Nations (2012). *Mainstreaming disability in the development agenda*. <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sites/disalliance.e-presentaciones.net/files/public/files/N1222764%5B1%5D.pdf>에서 2012.9.3. 인출.
- UN Enable (2012). *Rio+20 Outcome Document includes disability*. <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navid=46&pid=1600>에서 2013.3.21. 인출.
- WHO (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Geneva: WHO.
- Wiman, R. (2003). *Disability Dimension in Development Action. Manual on Inclusive Planning*. STAKES for and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the Korea ODA:

International Trends and Innovative Directions

Hwang, Ju 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k, Eun Hy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i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Mainstreaming Disability in Development,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Disability and Development